



우리는 세월호참사로 무엇인가  
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본  
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는  
권리를 빼앗기고 인권과 존  
엄이 파괴당하는 현실을 그  
대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내며 4

## 1장 | 세월호 참사의 시간들

2014년 4월 16일, 그날 8

그날 이후 11

다시, 그날 26

## 2장 | 세월호 참사와 인권

진실을 알 권리와 국가책임 \_이재승 34

생명의 존엄과 안전은 권리이다 \_김혜진 41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 \_박진 45

재난시대의 혐오 \_손희정 50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책임 \_유혜정 58

## 3장 | 4.16인권선언의 네가지 열쇠말

존엄 尊嚴 DIGNITY 64

안전 安全 SAFETY 71

인권 人權 HUMAN RIGHTS 77

선언 宣言 DECLARATION 83

[부록]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묻고 답하다 91

우리는 세월호참사로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는 권리를 빼앗기고 인권과 존엄이 파괴당하는 현실을 그대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호로 느꼈던 여러 감정들을 인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권이나 존엄과 같은 말들은 일상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세월호와 인권과의 연결고리를 잘 이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풀뿌리 토론을 위해 제대로 인권을 알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4.16인권선언에서 세월호 참사와 인권에 관한 작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장은 세월호 침몰부터 2015년 현재까지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짚어보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어떻게 우리의 권리가 침몰했는지, 그날 이후 어떻게 우리의 권리가 짓밟혔는지, 그래서 여전히 다시 그날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찬찬히 복기하면서 여러분의 기억과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2장은 우리가 어떠한 권리를 침해당했고 어떠한 권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장입니다. 각 주제들에 대해 오랫동안 투쟁하고 연구한 분들이 진실을 알 권리, 생명과 안전의 권리, 치유와 회복의 권리, 혐오 받지 않을 권리, 공감하고 연대할 권리를 소개합니다. 이 권리들은 4.16 인권선언 연속강좌 <세월호 참사, 인간의 존엄을 묻

다)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3장은 4.16인권선언의 네 가지 핵심 키워드인 존엄, 안전, 인권, 선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쇠말인 '존엄'에서는 우리는 왜 존엄하며, 존엄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열쇠말인 '안전'에서는, 국가가 말하는 안전이 아닌, 우리가 가지는 안전에 대한 권리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열쇠말인 '인권'에서는 인권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세월호참사를 인권의 문제로 말하는 것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열쇠말인 '선언'에서는 우리가 왜 선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연대와 공존의 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선언이 가진 힘을 살펴봄으로써 4.16인권선언운동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4.16인권선언 운동을 주변에 소개할 때 많이 듣는 질문들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다른 질문을 만들면서 더욱 풍성한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을 제안하거나 진행할 때, 풀뿌리토론을 참여하고 인권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생겼을 때, 이 작은 책을 참고하세요.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 널리 읽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진실과 안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더욱 커질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드림**



1장

# 세월호 참사의 시간들



## 2014년 4월 16일, 그 날

여느 날처럼 사람들이 아침밥을 먹거나 직장에 일찍 출근해 일을 준비하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재잘거리던 그날 아침. 육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있지 않았던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기우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그들을 인솔한 교사들, 배에서 조리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향했던 사람들, 화물을 실어나르던 사람들... 세월호는 서서히 침몰했고, 국가는 소용돌이치며 304명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바다에서 손 놓고 있었다. 돕겠다는 손조차 거절하면서 그들을 죽게 내버려두었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그날 모든 것이 침몰해버렸다.

**08:48** 전남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도 해역에서 세월호가 갑작스레 서남쪽으로 변침. 그러나 사고 이후 AIS 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은 4차례나 수정되었고 여전히 검찰이 주장하는 대각도 변침 시작 전 35초 구간이 비어 있어 정확한 사고 시점과 원인은 불명확.

**08:49** 세월호 내부 DVR 영상기록장치 갑자기 꺼짐.

**08:52** 단원고 학생 고 최덕하군, 전남 119로 최초 신고. 목포 상황실은 신고한 학생에게 경도와 위도를 묻는 등 미숙하게 대응.



- 09:07 세월호,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센터와 9시 37분까지 약 30분간 단독 교신. 진도 VTS는 승객 이동이 곤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으나 구조본부에 정확한 상황을 전달하지 못함.
- 09:10 세월호,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보고, 4월 운항 중이던 1천톤 급 이상의 17개 여객선 중 해양사고 발생시 국정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 여객선은 세월호가 유일.
- 09:19 청와대, YTN 보도를 통해 사고 인지한 후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고 여부 확인.
- 09:25 헬기 B511호기 현장 도착. 목포 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했으나 어떤 지시도 받지 못함.
- 09:32 해경 연안경비정 123함정 도착, 퇴선 명령도 하지 않은 채 좌현 중앙부 갑판으로 향하여 기관부 선원을 가장 먼저 구조하고 선장 등 80명 구조. 선내 진입 시도 하지 않음.
- 09:4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123정으로부터 현장보고 받고도 적절한 구조 지휘하지 않음.
- 10:00 중대본 첫 공식 발표 “세월호 승선 인원 476명, 단원과 학생 325명”.
- 10:06 해양수산부,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음”이라고 청와대에 보고.
- 10:17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과 학생의 마지막 문자메시지 확인.
- 10:21 세월호 탑승객 마지막 탈출.
- 10:25 청와대 상황실,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라고 해경상황실에 지시.
- 10:30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 브리핑.
- 11:01 MBC ‘전원 구조’ 방송 후 즉각 모든 방송사로 오보가 퍼져나감. 11시 6분과 8분, 단원고 학부모들에게도 두 차례 전원구조 소식 알리는 문자메시지 도착.
- 11:15 잠수 가능한 서해경찰청 특공대 도착.
- 11:18 세월호 완전 침몰.



- 11:58 한국 해군의 요청으로 미군 헬기 2대가 출동했지만 '조치의 효율성' 이유로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돌아감.
- 12:04 SSU 해난구조대, 해군 최정에 잠수요원 현장 도착, 헬기로 현장 탐색.
- 14:09 UDT 해군 특수전전단 현장 도착.
- 17:15 박근혜 대통령, 중대본 방문하여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들니까?" 등 엉뚱한 질문.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보고와 지시의 기록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었고, 최근 구두 보고와 지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11회의 서면보고 내용은 비공개로 향후 15년간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힘.

### 가혹한 기다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만나야 했다. 에어포켓 같은 게 없어서 이미 목숨을 잃었다더라도 에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만나야 했다. 아이가, 어머니가, 남편이, 우리가 기다리는 바닷속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한 것인지 알아야 했다. 그들을 구조하거나 수색하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했다. 그러나 국가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찾지 않았다. 수색의 시간이 길어지자 남아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색을 포기하도록 몰아갔다. 수색 종료 전에도 인양을 검토한다더니 정작 수색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인양에 착수하는 것은 차일피일 미뤘다. 아직 미수습자 9명이 바닷속에 갇혀 있다. 세월호의 진실과 함께.

####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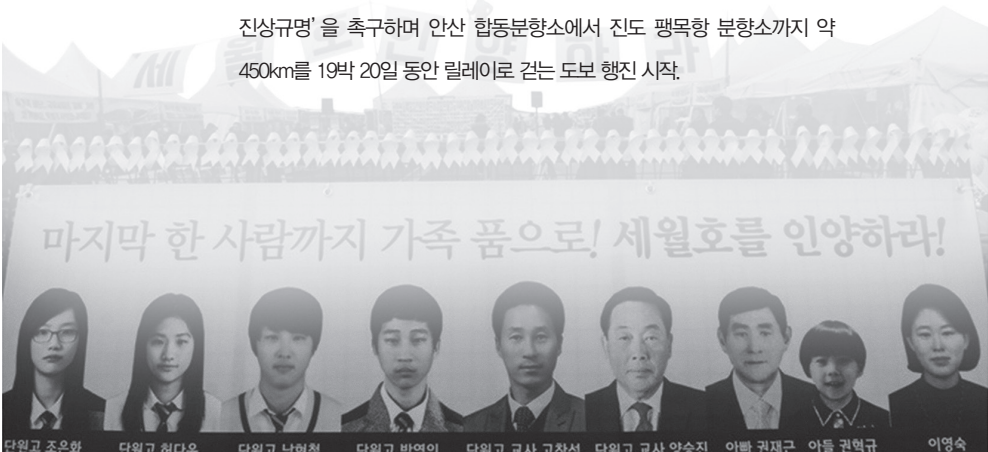
- 4.16. 구조당국이 실제 수중 수색 작업에 투입한 잠수사는 16명에 불과했음. 그러나 언론은 수백 명의 구조인력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해경이 제공한 구조 영상을 반복해서 내보냄.
- 4.17. 박근혜 대통령,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모든 지원을 하겠다”,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 주겠다”고 약속, 방송영상에서 체육관 내 가족들의 고향

과 향의 목소리는 삭제됨.

- 4.24. 참사 발생 9일 째였던 24일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바다 위와 수중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감.  
그러나 실제 23일에는 바지선 교체를 이유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수색을 중단하였고, 24일 오후에는 침몰 현장에 두 명의 잠수부만 투입한 사실이 드러남.
- 5.7. 5월 6일 세월호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 이광욱씨 사망. 해경은 이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민간잠수사 공우영씨에게 물으며 공씨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같은 날 MBC는 '유가족의 조급증이 잠수부의 죽음을 불렀다'라는 내용을 보도.
- 6.5.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리겠다는 약속의 마음을 모아, 진도 팽목항을 찾는 '기다림의 버스' 출발.
- 10.17. 9월 이주영 장관이 "마지막 한 명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수색하겠다"고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공언하던 때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세월호 수색 개선 대책' 문건을 작성하면서 수색을 종료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것이 밝혀짐.
- 10.29.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단원고 고 황지현 양의 시신이 수습됨.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에 남아 있음.
- 11.11.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사고 209일째 "세월호 실종자 수중수색 종료 대국민 발표"

## 2015년

- 1.26.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및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도 팽목항 분향소까지 약 450km를 19박 20일 동안 릴레이로 걷는 도보 행진 시작.



단원고 조은화 단원고 허다운 단원고 남현철 단원고 박영인 단원고 교사 고창석 단원고 교사 양승진 어바 권재근 아들 권혁규 이영숙

- 4.14. 정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미 1년 전에 확인하고도 계속 은폐하다 대통령의 언급에 맞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드러남.
- 4.16. 박근혜 대통령, 팽목항을 방문해 대국민 발표문 낭독하고 남미 순방 떠남.
- 4.22. 참사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월호 해상크레인+ 플로팅도크 이용 '통째 인양' 확정" 발표. 여전히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
- 5.22. 해양수산부, 오후 11시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입찰공고 냄.
- 7.7. 세월호 선체 수중촬영을 위해 사고해역으로 가던 유족들을 정부가 막음.
- 8.4. 세월호 인양 업체로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샬비지 컨소시엄 선정.
- 8.19. 세월호 참사 발생 490일 만에 세월호 인양을 위한 첫 '수중 조사' 이뤄짐.

**[세월호 인양의 현재]**

상하이 샬비지가 인양 업체로 선정되었다. 상하이 샬비지는 10월 말까지 수중촬영을 하고 유실방지 시설과 잔존유 제거, 그리고 인양을 위한 자료수집을 하게 된다. 그리고 2016년 봄에 인양을 시작하여 6월 말까지는 인양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인양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양과 관련하여 4.16가족협의회는 두 가지를 요청하였다. 인양과정을 공개하라는 것과 인양 과정에 가족협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가족협의회가 세월호 시신유실방지 설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해수부는 그제서야 유실방지 방안을 발표했고, 인양과정에서 선체가 부서질 위험성을 제기하자 해수부는 '믿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한 인양 과정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하겠으나 일상적인 참여와 공개는 어렵다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이다. 인양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세월호 인양을 위해 꼭 필요하다.

## 진실을 가두고 서둘러 덮으려는 국가

---

진실을 알아야 했다. 살려 달라는 구조 요청을 받은 국가가 왜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리지 않고 바닷속에 가뒀는지.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아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알아야 했다. 그런데 국가는 숨기기로 일관했다. 선장을 해경의 집에, 선원을 모텔에 재운 것부터 시작해 국회 국정조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문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유병언 이야기로 언론을 도배했고, 선장과 선원, 해경 123정장 등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 기소와 처벌로 모든 걸 덮으려 들었다.









---

### 2014년

- 4.16. 사고 당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이 여관이 아닌 해경의 집에서 잔 사실이 밝혀짐.
- 4.18. 경찰청 "인터넷과 SNS 통해 수색, 구조활동에 혼란 주는 유언비어 배포할 경우 엄정 조치" 발표.
- 4.21.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유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경영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 시작.
- 5.1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하면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함.
- 5.22. 검찰, 유병언과 장남 유대균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수배 시작. 7월 22일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언론은 유병언 그리고 그 주변인물들과 관련된 기사로 도배됨.

- 5.27.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청해진 해운의 회장 유병언 용의자와 그 일가가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말함. 이후에도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이와 유사한 발언을 4회 더 하며 유병언의 조속한 검거를 지시.
- 6.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4명 그리고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 또는 유기차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 열림.
- 6.12. ‘세월호 참사 희생자·미수습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6월12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 진도해상교통 관제센터 CCTV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함.
- 7.4. 세월호 침몰 당시 청해진해운 해무팀장, 화물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본부장·현장 팀장,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운항관리자를 맡았던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열림. 피고인 모두 혐의 부인.
- 7.25. 인양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나왔지만 국정원은 제시된 문건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
- 8.30.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6월2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대상·일정, 청문회 증인,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하송세월하다 청문회 한 번 못 열고 활동 마침.
- 9.16.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의혹 제기 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고 발언함.
- 10.6. 검찰,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에 대해 목포 해양경찰청 소속 123정장 김경일 경위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수사 마무리.

**세월호 참사 주요자주리인 차근 현황**

								
123정장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서장 김문호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수현	해양경찰차장 최사환	해양경찰청장 김석교	해양수신부 장관 이주영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국가안전실장 김장수	경사원 조사결과
해당없음	해당 없음	경명	X	X	X	X	X	경사원 조사결과
구속 기소	X	X	불구속 기소	X	X	X	X	검찰의 수사기소
구치소 재감	서해경찰청으로 발령	장소퇴임	직위해제	장소퇴임	국회의원	인선시장	주중대사	근황

- 10.15. 참사 6개월을 앞두고 진상규명 및 처벌·문책 절차를 서둘러 끝냄. 정부의 무능으로 300여명이 눈앞에서 희생된 참사에 대해, 56명을 기소하고 50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침. 이 중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 고위직은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해양경찰청 차장이 유일.
- 11.11. 이준석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나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1등 항해사 강 모 씨에게 징역 20년, 그 외 항해사를 비롯한 선원에게 5~15년에 달하는 형량 선고됨.
- 11.20.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0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 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화물하역 업체 우련통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0명에게 징역 10년~금고 2년의 실형 선고.

**[세월호 재판의 현재]**

세월호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까지 진행되었다. 이준석선장의 형량이 무기징역형으로 높아지고 다른 선원들은 형량이 낮아졌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사장의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낮아졌다. 부실관제로 기소된 진도 VTS 담당자도 무죄, 한국해양안전설비 사장과 이사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세월호 증선 인가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전 인천해양수산청과장과 팀장은 형소심에서 무죄, 부실증축에 개입한 한국선급 관리자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운항관리자들이 이후 연안여객관리를 담당할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 채용되기도 했다.

구조실패의 책임은 현장책임자인 123경장에게만 물었으나 실질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이 낮아졌고, 현장책임자의 뒷선인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서해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현재 국회의원, 인천행정부장관은 인천시장, 컨트롤타워인 국기안보실장은 주중대사로 일하고 있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

## 특별법 제정, 그러나 위태로운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법이 필요했다. 일반적인 조사와 수사 제도로 진실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분명했다. 다른 재난참사들처럼 시간이 흘러 그냥 잊히게 두어서는 안 되었다.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책임을 밝혀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요구했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러나 입법자인 국회는 국민의 의지를 받아 안기보다는 정략적 이해에 골몰했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공공연히 선을 그으며 압력을 행사했다. 반쪽짜리나마 겨우 만들어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

### 2014년

- 5.16.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시작.
- 7.9. '세월호 사고 희생자·미수습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여야와는 별도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표.
- 7.12.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시작.
- 7.14. 세월호 희생자·미수습자·생존자 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
- 7.15. 세월호 참사 생존 단원과 학생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박 2일 거리 도보행진
- 8.7.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국회 회동을

통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기존 새정치 연합의 요구를 철회하고 11개항에 합의함.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수사권 · 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한 아합"이라고 반발.

- 8.22.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유가족 농성 시작
- 9.2. 국민서명 참가자가 485만명을 기록.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하려 했으나,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막음.
- 11.5.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며 76일간 청와대 인근 청운 ·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해온 세월호 유가족이 "청와대는 응답이 없었다"며 "더 이상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겠으며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성을 철수함.
- 11.7. 참사 206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유가족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 12.11. 새누리당이 추천한 5명의 특조위 위원은 세월호 참사 오보를 적극 감췄거나, 옹공조작 사건에 참여했거나 또는 조사 대상인 집권 여당 · 정부와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지적.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 2015년

- 2.11. 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출범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여당 측 조대환 부위원장이 설립준비단이 마련한 예산과 직제안을 반토막 낸 수정안 제시.
- 3.31. 3월 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다시 노숙농성에 돌입.
- 4.13. 국회 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규정하는 정부 시행령이 모법(母法, '세월호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다는 해석 공개.

- 5.1.~2. 안국역 일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1박 2일 범국민 철야 행동' 열림.
- 5.6. 정부, 세월호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 강행.
- 7.10.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8개월째 집행되지 않아 진상조사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
- 7.13. 조대한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다른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결근 투쟁' 선언.
- 7.23. 청와대, 특조위 조대한 부위원장의 사표 수리.
- 8.17. 특조위 신임 상임위원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현 변호사 선출. 이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8월 13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불법 가설물을 즉각 철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논란이 됨.

**【특별조사위원회의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2015년 3월 초에 임명장을 받았다. 3월 말 정부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을 내놓았고, 4월 16일에 즈음해서는 시행령 폐기를 위한 대중행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세금도둑' 발언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시행령의 핵심이었던 3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그제서야 예산배정을 했다. 하지만 160억원의 예산 중에서 89억원만 배정했는데 그 대부분은 인건비였고 조사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비는 20%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사인원도 대폭 줄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정부 기관은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들은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무기력해지고 있다.

##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다

말하고 모이고 행동해야 했다. 깊은 공감과 연대로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곁에 섰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함께 행동했다. 그러나 국가는 함께 살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숨겨진 진실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니 명예훼손이니 하는 죄를 덮어씌웠다. 피해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며 나선 길을 가로막았다. 시민들이 함께 하려고 걷는 길을 가로막았다. 힘겹게 모인 사람들에게는 최루액 대포를 쏘아부으며 해산시켰다. 진실과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회로부터 지워버렸다.

### 2014년

- 4.20. 가족들이 미진한 수색 작업 등 정부의 대처를 믿지 못하겠다며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시도하다 경찰과 대치. 이 과정에서 가족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짐.
- 4.23. 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의 수중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방송 인터뷰를 했던 시민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고 구속함.
- 5.8. 단원고 학생 유가족 200여 명이 세월호 사고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김사근 KBS 보도국장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며 KBS에 항의방문 했으나 경찰에게 가로 막힘.
- 5.9. 길환영 KBS 사장의 사과를 받는데 실패한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에게 가로 막힘. 경복궁 근처에서 경찰이 노란 리본을 단 시민을 '불법 시위 가능성 차단' 이

유로 통행 차단.

5.18. 도심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침묵행진' 을 마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다 경찰과 대치하던 시민 100명이 신고 된 행진 통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됨.

7.24.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4일 밤, 광화문 앞에서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의 행진을 막아서면서 충돌 발생.

8.22.~24.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운영하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해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됨.

## 2015년

4월 각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단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해 논란이 됨.

4.11.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에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캡사이신 발포,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유가족과 시민 20명이 강제 연행됨.

4.16.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를 마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헌화를 위해 광화문 광장 분향소로 향했지만, 경찰과 차벽에 의해 가로막힘.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림.

진압 과정에서 유가족이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 과잉 진압 논란. 유가족 50여명이 18일까지 광화문 누각 앞에 고립됨. 차벽과 경찰 수백명에 둘러싸인 일부 유가족은 소변 등 긴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화장실이 아닌 길가에서 임시로 볼 일을 보기도 함.

4.18.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범국민 대회' 열림.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포함해 시민 100여명이 연행됨.



이 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용 CCTV를 통해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상황을 지휘했음이 드러남.

- 5.1.~2.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행진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고농도 캡사이신 물대포를 난사. 강신명 경찰청장이 차벽을 운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4일 만에 차벽 재등장.  
집회 및 행진 참가자 40여명이 연행됨.

####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기소/구속 현황 및 법률지원위원회 소개]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으로 지난 1년간 550명이 연행되었다. 400여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고, 지금도 계속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었다. 세월호참사 1주기 기간동안 열린 추모집회로 경찰은 4,16연대를 압수수색했고,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하며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범죄시하고 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벌금을 받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나서는 발걸음을 붙잡아 매기도 한다. 그래서 '4.16 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섰던 시민들 앞에 놓인 사법탄압에 맞서 함께 저항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재판을 앞두고 법률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며, 나아가 모임 권리, 애도할 권리, 저항할 권리를 위해 활동할 것이다.

## 모욕과 혐오로 기억을 지우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지워진 자리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말들이 꿈팡이처럼 번져나갔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카카오톡 유언비어는 국회의원의 SNS를 통해서도 반복재생되는데 국가는 잘못된 정보를 해명하기는커녕 내버려두었다. 참사 당일부터 인

터넷에는 수많은 혐오 발언들이 난무했고 거리와 광장에서 피해 자들에 대한 공격이 자행됐지만 국가는 역시 내버려두었다. 하지 못해 몇몇 네티즌을 기소했을 뿐이다.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2015년 4월, 특별법 시행령에 항 의하는 피해자들을 돈으로 모욕한 것은 다름아닌 국가였다. 진실 과 정의가 두려운 국가는 배보상을 거래하려 들었다.

인간의 존엄이 침몰한 그날 이후 모든 권리들이 침몰했다. 생명, 안전, 진실, 정의, 배상, 회복에 대한 권리들, 말하고 모이고 행 동하고 다른 사회를 도모할 권리들을 짓밟으려는 국가에 맞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연대가 권리들의 마지막 숨을 겨우 지켜내고 있다.

---

## 2014년

- 4.19. '피플뉴스'의 편집장인 서승만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월호 사 고에서 죽은 학생 부모중 중복좌파들이 있다면 이런 중자들은 애도할 필요없 어요"라는 글을 씀.
- 4.20.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들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좌파단체 색출'을 주장
- 4.22.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시체 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림.
- 5.4.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 자인은 자기 아이가 시위 에 참가하고 6만원 일당을 받아왔다고 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주장했 다가 결국 사과함.

- 5.20. 한기총 긴급임원회의에서 조광작 목사,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
- 5.25.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예배에서 “세월호 사고 난 건 좌파, 종북자들만 좋아하더라. 추도식 한다고 나와서 막 기뻐 뛰고 난리야”라고 말함.
- 6.10.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라며 “이제 모든 국민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시는 것이 서민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발언.
- 7.18.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냄. 이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과 ‘의사자 지정’, ‘대학 특례입학’ 등을 노리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음해 메시지가 퍼져나감.
- 7.21. KBS 2TV에서 방영되는 ‘다큐 3일’ 제작진이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관련 기획을 제작하려 했으나 제작기획국장과 OP의 지시로 중단됐다고 주장.
- 7.29.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냥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함.
- 8.1.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국회 단식농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노숙자에 비유함.
- 8.28. 유민이빠 김영오씨를 둘러싼 악성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고, 언론은 김영오씨가 이혼남이고, 자녀 양육비를 안 줬고, 자녀를 잘 보살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집중 보도하면서 사생활 캐기에 나섬.
- 9.6.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 단식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간베스트(일베)’와 보수 단체 ‘자유청년연합’ 회원 100여명이 ‘폭식 투쟁’을 벌임.
- 9.28.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리본을 철거하



겠다고 밝혔으나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저지로 성공하지는 못함.

## 2015년

- 1.16.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해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한다”, “호의호 식하려고 모인 탐욕의 결정체로 보였다”라고 말함.
- 4.5.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 인양, 이래서 반대한다’ 라는 글을 올림.
- 5.29.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댕(어묵)’으로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 다시, 그 날

### 치유와 회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 아프면 아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권리조차 빼앗은 국가에서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고 누군가는 속으로 더욱 앓아야 했다. 죽음을 차등화하는 사회는 결국 애도할 권리를 지울 뿐이다. 참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참사 이후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 누군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하게 됐을 때 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배상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세월호 참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2014년

**5.11.** 참사 한 달 만인 5월 11일에야 세월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의결이 마무리됨. 각종 정부 지원금을 합쳐야 그 금액이 가구당 평균 325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일회성이었음.

**5월**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짐. 일반인 유가족들의 생계지원과 심리치료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4월 29일 이후에야 일반인 희생자의 영정과 위패가 안산합동분향소에 안치되는 등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점을 지적.

- 6.25. 세월호 침몰로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생존학생 73명(전체 75명 가운데 2명 먼저 복귀)이 사고 71일 만에 학교로 돌아감. 학생 대표는 '저희는 단원고 2학년 학생입니다라는 글에서 "이제 사고 이전으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평범한 18살 소년 소녀로 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함.
- 12.9. 고려대 안산병원 한창수 정신의학과 교수, 생존 학생 74명 가운데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보고서 공개. 학생들은 초기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다 사고 1개월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했으나 6개월 뒤 증상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12.21. 세월호 참사 생존자였던 단원고 2학년 A양이 자택에서 악물을 과도복용한 채 쓰러진 것을 동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김. A양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친구가 보고 싶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짐.
- 12.23. 세월호 사고 이후 지원해오던 여객선 탑승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를 이후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12월 말로 지급 중단함.

## 2015년

- 3.20. 세월호 침몰 당시 20여 명의 학생을 구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던 화물기사 김동수씨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 시도.
- 3.2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피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일회성의 지원 대책밖에 포함하지 않음. 특히 의료 지원 1년, 심리치료 지원 5년, 치유 휴직 6개월 등 피해를 '숫자'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음.
- 4.1.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산정 기준 밝힘. 같은 날,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세월호 배·補償 1400억... 유족 치료비 등 500억은 별도' (조선비즈) 등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가 거액을 배상하는 것처럼 보도.
- 4.2.~4.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생존자 가족 등은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배·보상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유족들을 능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집단 식발.

4.16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관계자, 시민 등 500여명이 모여 정부 시행령안 폐기 및 배·보상 중단 촉구하며 안산-광화문 영정 도보행진.

4.5.~6. 해수부 주관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대한 현장 설명회에서 유족 및 피해자 가족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보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특히 배상금 신청 기한을 오는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한정할 것 그리고 '피해보상 이후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에 대해 비판.

6.29. '4.16가족협의회'에서 정부의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함.

7.1.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희생자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됨.

7.13.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정부가 청구 서류를 반려함.

8.13.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희생자 12명에 대해 37억원의 인적배상금과 4억7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이날까지 누적하여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72명, 생존자 157명 가운데 8명에 대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됨.

#### [자원특별법 및 배보상의 현재]

세월호특별법과 별개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세월호특별법이 세월호참사 희생자가족들의 의견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한 것처럼 '피해구제특별법'도 희생자가족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부는 진실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언론은 '피해구제특별법'의 배보상 액수를 다루며 진실을 흐리는데 이용하고 있다. 9월 말까지 배보상 신

청을 하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이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놓으라고도 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서 싸우느라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는 가족들이 많다. 많은 가족들이 피해구제특별법상의 배보상을 수용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긴 세월을 생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싸우기로 한 것이다.

##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때까지

우리는 다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 재난참사가 있을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닌 마무리 면피용에 그쳤고, 이내 각종 안전 규제는 다시 완화되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상품으로 만들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종합안전대책을 내놓았다.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이라는 떠들썩한 대책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보증하지 못함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부터, 모든 사람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2014년

- 4.29. 정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개정안에는 기업 재난 관리 인증서를 받으려는 사람 일부의 교육과정

전체 면제를 통해 이수 부담을 완화해주는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됨.

5.19.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히며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이후 해양경찰청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재난 상황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려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고 취소.

8.26.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안전산업육성방안의 주요 방향으로 '안전을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을 제시. 이에 대해 안전을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9.2.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 그러나 대책방안의 대부분이 세월호 참사 이전인 2014년 3월에 계획된 것들이어서 규제 전반이 강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음.

9.19.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착수 회의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서 '원격 의료'를 안전산업으로 제시.

10.13.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월호 사태 계기로 재난예방 민간보험 역할 키울것"이라 발언.

11.19. 기존의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신설됨. 그러나 조직의 지휘부인 장차관직에 모두 군 장성 출신 인사를 기용, 재난의 예방 및 대비 방안 마련에 전문성 부족 논란.

## 2015년

3.30. 5대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정부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발표됨. 그러나 여전히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안전보다는 규제개혁에 무게가 실려있음이 드러남.

30 세월호 참사, 인권으로 말하다



-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안전처가 제1회 국민안전의 날을 선포하고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개최함. 이날 행사는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한 공식행 사임에도 세월호 유가족이 일절 참여하지 않았으며,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별도 추모 수순을 마련하지 않아 비판을 받음.
- 5.1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정부 시행령은 안전사회'국'을 '과'로 격하시키며, 해양선박사고에만 국한 하여 안전사회 대책을 내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제약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에서는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첫째 과제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청원했다. 수많은 재난과 참사에서 최고책임자가 처벌된 경우는 삼풍백화점밖에 없었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기관사와 관제사는 금고형을 받았고, 시신훼손 등 증거인멸의 주범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은 무죄였다. 태안해병대 캠프에서도 직접 당사자인 교관들만 처벌을 받았을 뿐, 여행사나 캠프 운영 담당자 등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도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 해에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지만 법인은 처벌되지 않고 원청사업주는 더욱 처벌을 비켜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서 사망사고를 낸 법인과 최고책임자, 그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입법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2장

# 세월호 참사와 인권



## 진실을 알 권리와 국가책임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애도의 정치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시민들은 세월호에 죽게 내버려진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국가를 곱씹기 시작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유족들만의 불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법한 사태임을 즉각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시민들은 감성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의 비참한 운명과 연대를 이룸으로써 악몽 같은 삶의 허망함을 퇴치하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 앞에서 수수방관에 대한 죄책감과 피해자로서의 분노가 지난 1년을 버티게 해온 자양분이었다. 바로 며칠 전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섰던 한 분이 자해를 시도했다는 기사를 통해 참사가 남긴 깊은 상처를 기נם해본다.

권력과 그 동지인 언론들은 유족들을 고립시키고 시민들의 분노를 적당히 사사화(私事化)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우리는 정치화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유족의 감정까지도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간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 깊은 슬픔을 느끼며 때로는 우울증에 빠진다. 그런데 문제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죽임이라면, 그리고 이번 참사와 같은 황당한 죽음이라면

슬픔과 우울은 극단적으로 증폭되게 마련이다. 솔직히 이러한 슬픔과 우울증은 세상의 말처럼 과연 ‘치유’ 되거나 하는 건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된다. 그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감정도 지치거나 누그러지는 게 아닐까. 슬픔의 감정은 무단히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단히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것이 감정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법칙을 이해하고 슬픔과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적인 처방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일을 넘어서 적극적 행위주체로서 세월호 희생자를 사회적 가슴에 묻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 가슴에 매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소거하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우리의 일상에 명료하게 새기는 일이다.

##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유족들의 절박한 분노는 2014년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동력원이었다. 처음부터 망각과 축소의 정치를 추구하는 정부 당국에 맞서 유족들이 이끈 애도의 정치가 그나마 현재의 특별법 국면을 탄생시켰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시민은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며 특별법의 제정운동에 동참하였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부기관도 신뢰와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정부의 조직 바깥에서 문제해결장치를 새롭게 출범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 국가의 총체적 무기력과 작동불능의 사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은 일은 정부 당국이 아니라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약속하고 그 보장의 조건 위에서 권위, 폭력, 재정을 사용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 실제로 제대로 된 국가에서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혹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듯이 국가권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른바 ‘교통사고’를 대량참사로 바꿔놓았다. 국가권력은 그 주인인 시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우연을 기필코 운명으로 방치하는 국가를 재구성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애도의 작업이 되었다. 세월호 특별법은 그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제도권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성의 제도를 대신하는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세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파멸을 막아왔다. 이제 과업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참사를 낳았던 원인들을 규명하고 시정하여 2014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형사법정 조차 다루지 못했던 참사의 암흑을 밝히고 진실의 층위들을 찬찬히 해부하고 종합함으로써 시민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비전과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희생자들을 위한 정치적 애도를 완결짓는 작업이다.

## 피해자의 참여권

어쨌든 이 맥락에서 세월호 유족들의 권리를 되짚어 보자. 회복적 정의의 주창자였던 크리스티(Christie)는 ‘재산으로서의 갈등

(conflicts as property)’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피해자의 근본적 권리로 제시하였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을 위주로 하는 응보적 정의에 대비되는 관념으로서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간의 관계회복을 중시한다. 회복적 정의는 원래 비행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각광을 받다가 형사범죄 일반에 대한 대책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를 매개로 화해의 사상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크리스티가 말한 ‘재산으로서의 갈등’은 모든 갈등이 되돌아보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거나 그래서 돈이 된다는 천박한 창조경제적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범죄사건 자체에 대한 참여와 발언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소중한 가족의 상실로 인한 피해자의 원래의 고통과 사법절차의 국가독점현상에 따른 피해자의 소외를 극복하려는 피해자 중심적 정의관념이다. 어쩌면 이는 피해자의 인정투쟁의 법적 표현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우울증적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복시키는 시각이다. 이는 근대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내포한 병리적 괴리 상태를 시정하고자 원주민의 전통적인 재판의 지혜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가 법의 세계에 등장한지도 오래되었다. 형사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인정한 1987년 헌법도 피해자의 권리를 초보적으로 반영한 실례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세월호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책임 논의의 출발점이다. 물론 이 말이 유족들이 이 사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생명, 인권, 안전의 강화라는 취지에서 유족들에게 권한과 책무로서 피

해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크리스티의 주장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세월호 참사 자체에 심각한 국가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국가책임이 분명한 참사라면 정부 당국은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할 자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앞에서 자리를 비워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나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가 시민들에게 양도하였던 권한을 재탈환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공동화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회복적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다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정부 당국이 또 한 번의 상실감을 피해자들에게 부가하였다.

## 진실에 대한 권리

세월호 유족들의 권리를 짚어보는데 국제사회가 정립한 원칙들을 참조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폭력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 원칙과 피해자의 권리를 중요한 인권의 문제로 발전시켜 왔다. 유엔총회가 2005년에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A/60/509/Add.1)>은 그 완결판이다. 반 보벤-바시오우니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은 종래 갈등중심적인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영역에 피해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 유엔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불처벌 투쟁원칙(E/CN.4/2005/102/Add.1)>도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의 권리를 유추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인권피해자 권리장전과 투쟁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 책임자의 처벌을 포함해 재판받을 권

리, 배상에 관한 권리를 주요한 권리로 상정하고 세밀하게 부여하고 있다.

〈불처벌 투쟁원칙〉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특징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모든 국민은 인권침해가 야기된 상황과 이유를 포함해 진실에 대한 불가양의 알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만이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한다고 천명한다. 둘째로, 국가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기록과 증거를 보존할 의무를 지며, 집단적 기억이 멸실되지 않도록 수정주의나 부인주의 주장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고 천명한다. 셋째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의 운명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의 진실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 언급된 점은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진실에 대한 권리는 대체로 진실을 기억할 시민의 의무와 불처벌을 타파하기 위한 시민의 민주적 활동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미주인권위원회나 미주인권법원도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나 희생자의 가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민주사회나 국민이 보유한다고 밝혔다. 실종자의 운명, 사고원인에 대한 알 권리와 선박인양을 요구할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에 속한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좁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운행사업체와 운행자의 책임요소들, 관할 국가기관의 권한과 조치, 사후대책이나 구조업무 추진실태 등에 미칠 것이다.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규명된 진실에 따라 형사 책임이나 징계책임이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다각

도의 배상책을 제시한다. 권리장전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 이외에도 재활치료,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만족과 재발방지의 보증은 피해자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권침해를 낳은 관행, 의식, 제도를 타파하고, 새롭게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공직자·군·경·언론인·의료인 등에게 인권법의 교육이나 책임의식의 강화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미래의 안전한 삶을 형성하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상이다.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온갖 이윤, 권력, 체제의 논리와 투쟁해야 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정의하는 권력을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가나 그의 벗들인 관료층, 정치계급에서 시민이 되찾아 와야 한다. 위협을 정의하는 권력을 시민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재발방지의 보증이다. 민주적이라면, 법제와 관행이 안고 있는 위협을 드러내고 제도정치에 반영시키는 노상의회로서 시민의 위협 의회를 건설할 수도 있고, 타협적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음부즈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를 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 김종곤, 「세월호 트라우마와 죽은 자와의 연대」, 『진보평론』 61호, 2014.  
 이재승, 「화해의 문법-시민정치가 희망이다」, 『트라우마로 읽은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2014.  
 정원옥,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애도의 정치」, 『문화/과학』 79호, 2014.  
 Nils Christie, Conflicts as Property,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17, 1977.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은 권리이다

김혜진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다.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낭비나 비효율로 간주되고, 돈이 된다면 사람을 위협에 빠뜨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전규제 조차도 ‘기업 규제’ 라면서 없애려고 하고, 관리감독을 민간에 위탁한다. 기업들은 위험 업무에 안전장치를 하는 대신 비정규직에게 떠넘긴다.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책임으로 돌리고 책임자들은 면죄부를 받는다. 위협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위협을 부른다. 시민들과 노동자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다짐이 무색하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 무시되고 있다. 이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304명의 영전에 제대로 꽃을 바칠 수 없다.

##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권리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했다. 해경을 해체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위험요소를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에 벌어진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이나 판교 환풍구 추락사건에서 보듯이 안전 점검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또한 메르스사태에서 보았듯이 국민안전처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서류 한 장을 더 요구하는 관료기구일 뿐이었다. 국민을 대상화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안전을 국가의 의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상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전히 정부는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대국민 교육이다.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안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국가의 공적 책임은 사라진다. 안전은 시민의 권리이며,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은 기업과 정부이다.

## 책임자도 처벌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엉망

과거 재난참사에서 책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고 재발방지대책도 후퇴해왔다. 세월호참사도 마찬가지이다. 과적과 과승, 불법개조 등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사장은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되었다. 관리감독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설립했으나 세월호참사 관련 재판 중인 이들이 특별 채용되고 관리감

독을 소홀히 한 한국선급 출신이 모두 합격했다. 세월호 관련 뇌물수수 혐의자들은 대부분 집행유예와 무죄로 풀려났다. 구조실패 책임은 현장책임자인 123 경장에게만 물었고, 윗선들은 자리만 옮기거나 정년퇴임을 했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시장을 하는 등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재발방지대책도 마찬가지이다. 여객선 사고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연안여객 준공영화’는 사실상 무산되었고,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안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긴급 구조를 위해서 해양안전특수구조단을 구성했으나 예산이 없어서 훈련도 못하고 있다.

## 안전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드는 정부

이처럼 책임자도 처벌이 안 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기본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돈벌이’를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다.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정부는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대책을 내놓았다. 소위 ‘안전산업 발전방향’이었다. 안전펀드를 조성해서 안전산업에 투자하고, 민간손해보험업체를 활성화하고 관리감독의 책임도 민간손해보험업체에 맡기며 안전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시도만큼 ‘안전’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전국 550만명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의 활동도,

선박 사고 중심의 활동으로 축소해버렸다. 시행령으로 그것을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안전소위원회 예산도 1/7로 줄여버렸다. 이 정부에게 생명의 존엄과 안전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다.

##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만이 안전사회를 만든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시민의 권리이다. 우리는 이 권리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대중교통이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알아야 하며, 기업의 유해화학물질이 잘 관리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알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이들이 있다. 이런 ‘알권리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이것을 변화시킬 권리도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 시민안전위원회’나 ‘원자력 시민안전위원회’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한 때이다. 또한 시민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법인, 그와 결탁한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운동도 시작되고 있다. 현존하는 위협인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기 위한 대중행동도 시작되고 있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이라는 권리의 주체로서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 치유와 회복은 피해자들의 권리

박진 |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참사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치유 받을 권리가 있다

참사 이전으로 회복할 권리, 치유 받을 권리. 그러나 가능할까? 시간을 되돌리지 않는 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올 수도 참사 당시의 참혹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에 정부와 사회는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참사와 재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한국사회에서, 피해자는 광범위하다. 모든 이들이 재난 위험군에 속해 있다. 힘이 없거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일수록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치유와 회복 절차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며 일방적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회복과 치유를 위한 피해자 지원과 추모 과정은 구조 실패의 연장선에 있었다. 지원대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상과 보상(이하 배·보상) 절차는 피해자들을 이중 고통에 빠뜨렸다. 피해자 지원을 금액으로만 환산한 까닭이다. 언론은 시시각각으로 액수를 공개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데 일조했다. 모욕은 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조장되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로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참사이후 피해자들은 새로운 심리적 외상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피해자간 차

별도 심각하다. 기간제 교사는 순직조차 인정받지 못했으며 민간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심지어 민간잠수사는 해경을 대신해 형사 법정에 기  
소되었다.

추모사업 역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기억 사업은 추모리본을 다는 것조차 범죄시 되  
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심 치유와 회복 과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정부에 의해 다른 피해가 양산되었다. 피해자들의 지원  
받을 정당한 권리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피해자들이 “진상규  
명 없이 배·보상 절차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하도록 한, 우리  
사회의 잔혹함은 참사를 진행형으로 만들고 있다. 치유와 회복의  
권리는 정당한 권리임과 동시에,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분  
명히 해야 한다. 그로부터 치유와 회복은 시작된다.

## 세월호 참사 피해 규모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이다

세월호 참사는 많은 피해와 피해자를 남겼다. 피해는 총체적이고  
지속적이다. 우리 사회는 재난참사 피해와 피해자에 대해 아직  
제대도 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  
들을 다시 정의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  
도록 요구하고 있다. 언제까지 당사자와 가족이 모든 고통을 안  
고 살게 할 수는 없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응  
원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시스템을 총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

야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을 다양한 심리적 외상은 평생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과제다. 트라우마는 속성상 완화될 수 있을 지언정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지속되기 마련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는 생애주기 전반에 맞는 지원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참사 뒤에 참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교훈을 찾아 같은 유형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추모 사업에도 소홀했다. 세월호 참사를 국가와 사회가 기억하는 일은 재난참사의 재발을 방지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추모하는 일은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이, 상생과 협력보다 경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억과 추모, 치유, 안전을 위한 추모 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추모사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피해자 참여 없이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과 추모 사업이 진행된다. 우려되는 점은 지원과 추모 관련된 일을 국무총리 산하 지원·추모위원회에 일임하고 방관하는 일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추모 사업에 대한 원칙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자들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짚어보자.

## 치유와 회복을 위한 권리

피해자는 피해 당사자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 위협 신호이며, 동시에 존엄 회복의 주체이다.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대책이 짜여질 권리를 가진다. 다시는 이러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참사 직후에 이루어진 활동부터 현재, 미래에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생애주기에 따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피해자는 당사자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구조와 지원과정에 참여한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피해와 관련한 범위에 노출된 참사 피해자들도 포함 되어야 한다.

피해 범주 역시 생명과 신체, 정신적, 재산상 직접적 피해는 물론 구조활동·피해자 지원 과정과 언론보도·불건강한 사회적 소통방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피해를 포괄해야 한다.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받을 권리는 피해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다. 또한 추모와 기억할 권리는 또 다른 재난을 막고,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한 권리다. 추모와 기억의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표현하지 않고 담아내는 고통도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대의 모든 재난참사 발생은 사회적 원인에 의하며, 책임도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따라서 모든 재난참사 지원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 지원 범위는 치유를 위한 공동체 지원



까지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평등하고 차별 없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 접근에 있어 권리 침해 없이 친절한 정보 제공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간소하고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와 사회가 기억해야 할 내용과 방식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유무형의 추모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위한 추모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추모 사업은 추모(기억), 안전, 치유, 교육 내용을 포함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추모 사업은 과거의 슬픔을 딛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접근성, 지속성, 정서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모 사업은 정치적 고려 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치유와 미래 세대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은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갈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 받아야 한다. 세월호 선체와 교실, 유품 등 진상 규명, 추모와 기억에 관련된 모든 것은 신중히 보관되어야 한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은 진상규명이 끝난 후에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설명과 사과가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비용을 치루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의무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은 치유와 회복의 의무를 진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피해자들이 원래 삶으로 복귀하도록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재난시대의 혐오

손화정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재난의 시대를 산다. 위험은 도처에 널려있고, 이내 재난으로 닥쳐온다. 재난은 제대로 예측되지도 수습되지도 않기 때문에 위기감은 일상이 되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 웹툰 등 대중문화는 지속적으로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매일 매일이 재난에 대한 보도로 가득차 있다. 갈수록 재난과 파국에 대한 상상력이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이다. 과거에 재난이 인간 외부, 즉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이제 재난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문명으로부터 온다. 예컨대 쓰나미라는 자연재해가 방사능 유출이라는 인공재해와 만난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우리 시대 재난의 성격을 고통스럽지만 정확하게 보여준다.

### 재난의 시대

지난 20여 년 간 한국 사회를 사로잡았던 재난의 스펙터클은 조금 더 인공적인 재난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3년 서해 페리호 대형 참사로부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IMF, 1999년 화성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 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용산참사,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펼쳐진 재난의 스펙타클은 그야말로 ‘화려’ 했으며, 이 모든 참사는 인재(人災)였다. 참사의 반복은 그 절절마다 국가가 선보였던 대책들이 아무런 실효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5년, 우리는 그 모든 재난의 상처를 안고서 ‘포스트 416’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재난의 시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재난의 반복이 ‘재난의 시대’를 규정하는 전부는 아니다. ‘재난의 시대’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본주의라는 삶의 조건이 재난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철학자 한병철은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라앉는 배를 탈출한 선장은 공공심을 그저 망상에게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육신”이라고 말한다. 세월호의 원인은 “규제완화, 노동 유연화, 민영화를 야기한 신자유주의”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규정 짓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체제는 세월호 참사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그리고 그 당대적 판본인 신자유주의의 성격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세월호’는 언제고 어디에서고 다시 우리를 덮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재난의 시대’란 이 세계 자체가 재난에 근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한다. 위험사회란 ‘통제 불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사회다. 근대 이전에 위험이란 자연에 의해 야기된 어

절 수 없는 것이었다면, 근대에 위험은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의 원칙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상상되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자연 정복에 대한 욕망은 근대에 이르러 달성된 듯 했다. 그러나 현대는 더 이상 “스스로 산출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속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인류의 자량이었던 문명은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할 수 없는 위험”을 불러온다(백: 2012, 22쪽). 자연을 예측하고 그 위험을 다스리고자 오랫동안 투쟁해 온 인간은, 역설적으로, 기술 발전이나 생산성의 급증과 같은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비롯되는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다.

## 위험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런데 현대의 위험은 평등하지 않다. 백에 따르면, 우리 시대의 위험은 ‘결핍사회’에서 부(富)가 분배되었던 위계와 질서를 따라 분배된다. 위험이 실현된 것인 재난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공평하게’ 닦쳐오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대형 참사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소년 피해자가 특히 많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더 빈번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이동연: 2014, 23쪽).

이때 ‘승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화가 생산해 온 위험은 “거대한 사업거리”다. “위험은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찾아 온 탐욕스러운 수요”인 것이다. “굶주림은 채워질 수 있으며 궁핍도 채워질 수 있으나, 문명의 위험은 밑빠진 독과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어서 충족될 수 없으며 무한히 자가 생산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온갖 위험에 대한 위험 뒤에 따라붙는 보험 광고를 흔하게 본다. 미리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보험이란 재난의 예방과는 무관하다. 보험은 재난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장사를 하고, 그 예측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지불을 유예시킨다. 보험이야말로 위험과 재난이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잘 보여준다. 위험의 확산과 상업화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다.” (백: 2006, 59쪽.)

이처럼, 위험의 상존과 재난의 발생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된다.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수해는 한 예다. 뉴올리언스가 카트리나로 초토화되자 재개발에 명을 걸었던 기업들과 공공영역 민영화를 추구했던 정치인들은 그 이해를 함께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 쓰나미 이후 서구 자본이 유입되었던 경과, 남아프리카 해안의 서구 자본 유입을 반대했던 원주민들이 자연재해 이후 결국 그 자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에서 재난은 빈번하게 자본의 방법론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재난 자본주의’<sup>4</sup> (오미 콜리안: 2008)다. 재난 자본주의에서 재난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흥미진진한 기회”가 되며, “공적 영역에 대한 조직적 공격”을 통해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한다. 재난은 신자유주의화의 계기가 되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삶의 조건은 다시 재난을 초래한다. ‘악순환의 고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 안전이라는 판타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재난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면, 이는 사회적 위기가 된다. 그리고 공유된 위기감은 인간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폐기해 버리는 반동적 복고주의의 도래를 불러온다. 사람들이 불안감 속에서 “자유나 평등 같은 근대적 가치보다 ‘안전’을 갈구”하게 되기 때문이다.<sup>(문경행은: 2012, 22쪽)</sup> 유동성의 시대를 견뎌낼 견고한 세계관, 무너지는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안전망, 나의 불안을 잠재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문화와 정서.

대중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생명을 사지로 내모는 지배적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함으로써가 아니라, 전통적인 질서, 이미 익숙해서 이해하기 위해 따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신념 체계, 그리고 이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득권의 인정 등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것들에서 찾으려 한다. 안전하다는 감각은 기존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질서를 유지해 온 권력에 의존할 때 더 쉽게 획득되기 때문이다. 상실의 고통이 경제 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밀려나는 것 역시 우리가 이런 ‘쉬운 길’을 택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통은 구체화되지 않지만, 경제는 쉽게 수치화되어 보여진다. 그리고 이런 경제논리란 한국 근대화 안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그 설득력을 갖춰왔다.

그리하여 재난 희생자들은 ‘우리’로부터 배제되어 ‘타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때에야



우리는 안전이라는 판타지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통을 말하고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한다는 이유에서 또다시 '이방인'이 된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이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기억해야 한다고, 이 재난의 폐허를 응시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존재들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재난의 피해자/희생자들을 '우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 혐오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국가 역시 재난을 체제와 구조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재빠르게 개인의 문제로 만드려는 노력 안에서 혐오를 조장한다. 그렇게 세월호는 '일개 교통사고'가 되고, '유병언이라는 부도덕한 개인

만의 책임'이 되며, 특정 정치세력이 정쟁의 기회로 삼는 오염의 장이 되거나, 일부 유가족이 생떼를 쓰는 몰지각의 공간이 된다. 예컨대 특별법을 제정하면 국가의 질서와 안위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법석을 떠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 혐오의 수사는 대중들에게 의외로 쉽게 스며든다. 세월호와 혐오를 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폭식투쟁이나 '세월오뎅' 같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폭력의 장면을 떠올리지만, 이런 예들의 나열은 세월호를 둘러싼 혐오의 정서를 예외적 사건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극악한 그 표층을 걷어내고 나면, 기실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의 정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혐오의 정서 안에서, 우리는 상실을 충분히 슬퍼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슬픔은 분노와, 분노는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차단하고 혐오와 허무주의적 냉소로 분노를 희석시켜 버릴 때, 우리는 세월호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기 힘들어진다.

폭식투쟁을 하거나 '세월오뎅' 운운하는 일베와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재미'다. 아니, 오늘날 재미야말로 누구에게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한때 '웃음'은 세계를 뒤집는 불온한 것이었지만, 이제 웃음은 세계가 생산하는 모순과 고통을 잊게하는 손쉬운 만병통치약이 되었다.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는 말은 농담을 농담일 수 있게 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들을 보지 말라는, 그야말로 '가만히 있으라는' 강요에 불과하다. 이렇게 재미와 웃음, 힐링을 통한 행복에의 추구가 정언명령이 된 시대에, 슬퍼하고, 애도



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저 ‘노잼’ 일 뿐이다. 우리는 ‘노잼’ 이 슬픔과 분노를 반사시켜버리는 시대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불온한 것으로서 웃음을 되찾고, 그 웃음과 함께 충분히 슬퍼하고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것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과정으로서의 4.16 인권 선언의 일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 나오미 클라인, 『쇼크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Biz, 2008.  
문강형준, 「왜 ‘재난’ 인가? - 재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문화/과학』 72호, 2012.  
올리히 벡, 『위험사회』,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올리히 벡,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 · 이진우 역, 도서출판 길, 2012.  
이동연, 「재난의 통치, 통치의 재난」, 『문화/과학』 79호, 2014.

##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의 책임

유혜정 |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사건이 해결되길 기대하는 것보다 아들이 살아오길 바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태안해병대캠프 참사로 2013년 고등학생 아들 우석이를 잃은 엄마 김선미 씨의 목소리가 비통함에 떨려왔다. 엄마는 그리움과 분노, 슬픔과 죄책감으로 얼룩진 긴 하루가 지나 새벽 동이 터오를 때면 우석이에게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안도로 삶을 겨우 이어간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동생 승희를 잃은 스무살 승아는 삶이 아무 재미도, 의미도 없으며 서글피 울었다. “삼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오백일이 다 되었는데도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 거지같은 세상에 열심히, 착하게 살던 승희가 차라리 하늘로 간 게 더 나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생이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건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리움,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과 커져만 가는 고통 속에서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곁을 지나고 있다. 세상은 참사 앞에서 잠시 들쭉였으나 여전히 제자리. 정부와 권력자들은 시간이 흐름 앞에 일사분란하게 몸을 숨기고, 진실을 묻는다. 잊지 않겠다 다짐하고 애도했던 많은 이들이 바쁜 일상에 다시 붙들려 간다. 세월호 전과

후는 분명 달라야한다고 모두 힘주어 말했건만, 지난 20년 동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2천여 명에 달하건만, 희망적인 변화의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여 텅빈 광장에 홀로 선 듯한 서글픔과 두려움이 엄습해오지만 우리가 돌아설 수 없는 건, 참사가 불운한 개개인들의 사건이 아닌 부정의의 필연적 소산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만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인간성과 공동체의 소멸을 알리는 증후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 공감은 인권의 세계를 여는 열쇠

인권사회학자 스탠리 코언은 역사 속에서 인권침해에 귀 기울이고 행동에 나섰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그들이 “곤경에 빠진 사람을 외면한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찾는다. “상식적으로 인간의 품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 자기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그래야 하므로 돕는 것,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가족 내에서 배우고 실천한 일상의 도덕을 타인에게도 계속 행하는 것 등”이 그들을 ‘인권전령사’로 만들었다. 악이 평범했던 것처럼 선 역시 평범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새삼 깨닫는다.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다. 인간은 삶의 물질적 필요에서도, 사유와 정신적 기능에서도, 그리고 마음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기대어 설 수밖에 없는 상호의존적인 존재들이다. 따라서 인

간은 개인의 고유성과 인간들 사이에서 맺게 되는 관계성이 합쳐졌을 때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내 안에 타인의 자리를 남겨놓는 것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살아나가는 과정이며, “인권에 의해 규율되는 세계를 확립하는 열쇠”이다.

하지만 공감은 자연적인 산물이나 능력이 아니다. 교육되고 노력하며 사회적으로 복돋아지지 않는다면 언제든 부서지기 쉬우며, 공감의 자리에 냉소와 ‘부인’ (否認)이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다. 가족들이 보상금이나 더 타려는 파렴치범으로 매도되고, ‘할 만큼 했다’ ‘지겹다’ ‘1년에 사고로 죽은 이들의 수도 그보다 많다’는 등의 언설이 가능한 건 우리사회에 공감보단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냉소와 부인의 문화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 공동체의 연대할 책임

인간성과 공동체의 소멸을 목격하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바로 연대다. 연대는 내가 혼자서는 오롯이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각자 고립되어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하는 일상 은, 나와 내 가족의 살 길에만 골몰하는 삶은 평온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마치 강제수용소에 갇힌 양 죽음을 맞이하게 될 가스실로 줄을 지어 가는 삶이다. 감당키 어려운 고통에 직면한 그를 위해, 인간성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서로를 위해 “지

금 내 곁에 한 뺨을 내줄 수 없다면 아무리 여유가 많아져도 열 뺨을 내줄 순간은 오지 않는다”. 하여 연대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연대를 통해 올바른 기억을 만들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사라져간 이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의 삶도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기억은 진공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집합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은 물론이고 이 둘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적 기억이라는 것조차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은 물론이고 정치권력과 언론, 이데올로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억을 조작하거나 단절, 망각시키려는 시도들이 늘 있어왔다. 죽음의 정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들의 증언으로부터 기억을 만들어야한다. 그 기억에서 출발해 무엇이 사건의 진실인지를 밝히고 일상적이며 만연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한다. 또한 기억은 사라져간 이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있게 한다.

세월호가 묻는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는가? 아니면 각자가 알아서 제 앞가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감이 연대로, 연대가 새로운 정치사회적 모색과 희망적 변화로 이어지길. 그 희망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이야기되길.

#### 참고문헌

- 류은숙, 『사람인 까닭에』, 낮은 산, 2012.  
벤덴 필즈,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할 권리」, 박동천 역, 모티브북, 2013.  
레베카 솔닛, 『이 페어를 응시하라』, 팬타그램, 2012.  
스탠리 코언, 『진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조효제 역, 창비, 2009.  
허버트 허시,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강성현 역, 책세상, 2008.  
Mette Lebech, What is Human Dignity?, Maynooth Philosophical Papers, 2004.



3장

# 4.16인권선언의 네 가지 열쇠말

존엄 / 안전 / 인권 / 선언



열쇠말 하나,  
**존엄**  
[尊嚴, DIGNITY]

**우리는 모두 존엄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인권의 기본 조건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인권선언 뿐 아니라 여러 국가의 법이 인간의 존엄이란 그 무엇에도 선행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질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보장을 최고 가치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국가와 그에 준하는 정치체제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구성원인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 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 셈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일 매일 인간의 존엄이 국가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 존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쩌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주장, 즉 ‘인간의 존엄성’은 그 무엇에도 선행하는 주된 권리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존엄성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의미가 있으며, 그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타고났음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존엄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만이 존엄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존엄하다는 생각은 인간 사유의 점진적인 진보와 오랜 투쟁의 역사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쟁취한 존엄함이란 단순히 높은 지위나 우아한 태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삶의 격을 갖추고 누릴 수 있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격은 나 홀로 단절적으로 갖추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함께 고려하는 공존의 기술 안에서 비로소 갖추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우리가 존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존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권위적인 사회,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존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쉽게 구별되는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한국 사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사회의 통념과 다르게 존엄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던 적던, 어떤 직종에 종사하던 혹은 전혀 일을 하지 않던, 어떤 성별이나 신체적 조건을 가졌던, 교육 수준이 어떻던, 어떤 병을 앓았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간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랑을 하는지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엄이란 단 한 명의 구성원도 놓치지 않는 매우 촘촘한 그물망입니다. 그리고 이어말로 우리가 존엄을 통해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세계의 목적이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가치는 숫자나 돈으로 계산될 수 없으며, 그렇게 팔리거나 소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스펙을 따지고 스스로를 상품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자본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해 온 역사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했어야 하는 국가가 자본과 동맹을 맺고 이를 지지해 왔다는 점이지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이 계산되는 순간, 우리의 존엄은 훼손당합니다.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자본은 우리를 숫자로 만듦으로써 손쉽게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삶의 격을 끌어내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간의 기록은 국가와 자본이 어떻게 인간을 물건으로 취급하면서 그 존엄함을 짓밟아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였습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다시 선언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는 것은 우리를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국가와 자본의 폭력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어렵게 쟁취한 ‘존엄의 평등성’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동시에 그에 무기력하게 동조하는 동시대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요. 국가와 자본은 계속해서 경제 침체라던지 국민의 결속 와해, 중북이라는 이데올로기 등을 읊조리면서 “그만하라” 혹은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움직이게 하는 규범이나 법칙, 혹은 논리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존엄 그 자체를 넘어서서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자본 역시 우리의 존엄성을 그 작동 원리와 실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설득하고 정당화시킬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 국가와 우리의 존엄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고매한 도덕적 당위이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삶의 격』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존엄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페터 비에리는 인간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삶 자체가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존엄을 지키는 삶’의 형태가 그런 위험을 견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비에리는 “존엄성 있는 삶은 그냥 이렇게 또는 저렇게 살아가, 하는 지침이 아니라 위험을 겪은 실존적 경험에 주어지는 실존적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상존하는 위험과 계속되는 재난,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능력을 상실한 사회의 파국 속에서 존엄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간됨과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글의 시작에서 언급했던 법적으로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권리입니다. 더불어 국가는 구성원의 생존을 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주권자로서 국가 권력의 주체로 등장해야 합니다. 이는 수어 년에 한 번씩 나를 대의할 대표자를 뽑는 것으로 국민의 주권자이자 정치적 주체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민은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주권자로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인간 존엄과 자신의 존재의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주체이자 내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 존엄해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국민을 배제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세월호 침몰 후 국가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들을 계속 무산시켜 왔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우리의 존엄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 과정으로서의 존엄, 그것을 지키는 민주주의

인간이 존엄하다는 생각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생각이 세계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비로소 인간의 침범당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수 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투쟁과 사유의 진보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존엄이라는 가치가 세계사에 등장한 이후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존엄이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셈입니다. 존엄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과정 그 자체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속해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사회는 존엄을 잃은 야만의 시간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렇게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태업을 지치지 않고 감아나가는 역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힘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권위와 권력에 대항하여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과정, 그 자체가 무엇보다 민주주의라고 할 것입니다.

열쇠말 들,  
**안전**  
[安全, SAFETY]

표준 국어대사전에서 ‘안전’이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안전은 보다 더 포괄적으로 “재산, 사람, 주거, 공동체, 국가나 조직이 위해로부터 보호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 대상에 따라 안전은 무려 30가지 의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안전에 대한 권리와 국가

넓은 의미로서 안전은 국가가 외부로부터 공격·침략에 대비하여 자국의 안전을 유지·확보하는 일을 뜻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것을 목적으로 사회 보험, 생활 보호, 공중위생 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 안전은, 특정 장소나 컴퓨터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정당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으로서 ‘보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안전’이 거론되는 경우로는 우선 ‘국가안전보

장'을 들 수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군의 의무<sup>제5조제2항</sup>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는 근거<sup>제91조</sup>가 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sup>제37조제2항헌단</sup>, 국회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sup>제50조제1항</sup>,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사유<sup>제76조제1항</sup>, 재판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sup>제109조</sup>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이 언제나 예외적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전문에서 표방된 국가란,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국가안전보장 역시 이러한 국가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제37조제2항후단).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제34조제2항). 이것이 헌법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두번째 '안전'입니다.





## 국제인권규범이 말하는 '안전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범에서는 보다 더 다양한 의미로 '안전에 대한 권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sup>제3조</sup>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sup>자유권협약 제9조제1항</sup> 다음으로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sup>제22조</sup> 이는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sup>제25조제1항</sup> 국가는 이러한 사회보장의 실현을 위해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sup>사회권협약</sup>

제7조

다른 한편으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지의 자유, 외국인의 권리, 재판의 공개,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노

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권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안전보장과 사회보장의 권리 간에 계속 긴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안전’을 둘러싼 긴장

헌법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인정하는 까닭은 국가가 본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때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일단 현대사회가 매우 복잡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울리히 벡이라는 학자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인간 호르몬 체계의 변동 등 ‘위험사회’가 과학 기술과 이에 기반한 군사·경제력에서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학자는 심지어 오늘날 국가가 사회 보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급속한 세계화와 갈수록 강해지는 해외 시장의 영향력 앞에서 국가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세수를 줄이면 이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 보장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보장이 공공의 역할로부터 개인의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안전도 각자 구매해야 하는 시장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 건강보험보다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일이 늘어나는 현상이 대표적이지요. 이제, 위험한 사회에서 과거보다 더 각자 도생(各自圖生)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을 하지 않는 국가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국민은 국가의 의미를 묻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유일하게 남은 ‘안전’, 즉 ‘국가안전보장’을 유력한 존재이유로 들고 나섭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의 증가, 테러의 위협을 강조하며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가는 점점더 경찰력을 늘리고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정보기관의 비밀활동 또한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안전’의 역설, 다시 안전에 대한 권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내세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이 논리가 사용되곤 합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가 용산 철거민, 쌍용 노동자, 밀양 농민, 장애인 활동가처럼 불복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보십시오. 불평등한 사회에서 가난

하거나 소수에 속한 사람들일수록 차별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고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발언권은 억압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안전보장’ 만을 내세울 때 역설적이게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생각하는 사회 구조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습니다. 그 바다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메르스처럼, 때로 위험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국가가 대형 민영병원의 이해를 위하여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할 때 그 위험이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국가의 제한에 맞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는 진정한 국가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존엄’ 과 ‘안전’ 이 함께 보장되는 길입니다.

열쇠말 셋,

# 인권

[人權, Human rights]

##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이 중요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문제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어려운 물음을 던집니다. 인권을 인간을 최고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간사회의 기본가치라고 정의한다면, 세월호 사건이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식의 뜻풀이 방식으로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과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일에 효과적일까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 정의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사전적 정의 역시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인권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아니라 인권이라는 가치의 역사적 맥락인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인권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출현하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 인권의 자격을 따지던 시대는 길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말은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각 개인들은 출생과 더불어 누구나 평등하게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전 쯤의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생각,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생각이 허황된 관념이라고 치부된 시절이 훨씬 더 길었던 셈이지요.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부모가 누구인가, 혹은 성별이 무엇인가 등에 따라서 고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구별이 뚜렷했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한 자의 권리는 제한되어야 했지요. 역사 이래 국가가 출현한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천민 혹은 노예는 결코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천민이나 노예들은 걸어 다니는 재산이나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으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은 오로지 강자들의 필요와 호의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인간의 권리를 특정한 혈통, 종교, 성별 등의 자격기준에 따라 불

평등하게 분배하는 체제는 오래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대략 6천 500년 전 인류 최초의 국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이래, 불평등한 권리체제는 세계의 무수한 국가들 속에서 6천 200년 가량을 이어온 것입니다.

##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

이러한 불평등한 권리체제는 18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끝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789년 발발하여 1875년 제3공화국이 수립되는 시기까지 이어진 프랑스 대혁명은 불평등한 권리체제를 종식하고 새로운 권리체제를 수립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권리체제의 원리가 바로 인권이었지요. 즉, 이 위대한 혁명은 모든 인간의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며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랑스 대혁명은 무엇보다 ‘인권혁명’이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단순한 생각을 사회제도의 원리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만들어낸 혁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 존엄의 동등성과 그 권리의 평등성을 부정하는 토대 위에 세워진 권리체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새로운 권리체제의 토대로 삼은 혁명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많은 국가들은 인권을 국가의 핵심 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제도와 질서가 성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권리를 제한 당하거나 빼앗긴 사람들은 인권의 이념을 내

세우며 자신들의 존엄성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싸웠고, 또 그렇게 권리를 쟁취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인 권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자들이 권리가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준 선물이 아니라, 권리 없는 자들이 힘을 합쳐 싸움으로써 스스로 쟁취한 투쟁의 산물인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 인권이 진전되고 확장되어온 역사는 이처럼 투쟁의 역사였으며, 이는 이 땅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국에서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말의 자유는 박탈 당하고, 집회와 시위, 결사의 권리는 제한되었으며, 여성은 차별받고, 노동자들은 극심하게 착취당하였지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이들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언어맞고 잡혀가고 고문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권은 이러한 독재정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이들의 투쟁을 위한 언어였고, 독재정권의 지배를 물리치고 새롭게 만들어 낼 사회의 구성원리였습니다. 그러한 지난한 투쟁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권의 가치는 조금씩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권리, 여성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성소수자의 권리, 이주민의 권리가 그와 같은 싸움을 통해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은 도덕적 법칙을 그저 현실에 적용한 결과 등장하고 구현된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권리가 동등할 수 없으며 오로지 소수의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맞서 권리 없는 자들이 자신의 존엄성과 평등함을 피 흘려 증명한 결과 쟁





취하게 된 가치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으며, 그러한 투쟁의 역사 없이는 인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 **타인의 권리가 실현되는 조건이 나의 권리가 실현되는 조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인권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일상과 사회 제도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 없이는 인권이란 다만 공허하고 박제된 개념으로 남을 뿐입니다.

인권은 땅이나 물건처럼 개인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개별화된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인권은 권리의 평등과 존엄성의 동등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권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의 권리가 보장될 때 나의 권리 역시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자 움직임으로

서의 ‘인권’의 가치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관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며,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인권은 개인이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실현하고 보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홀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인권은 필요 없습니다. 인권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지는 관계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는 우리가 나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타인의 존엄한 삶이 나의 존엄한 삶의 보장 조건임을 인권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타인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경우 그러한 침해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이미 그것이 침해되고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인 것입니다.

열쇠말 넷,  
**선언**

[宣言, Declaration]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선언’의 한자어 그대로의 뜻은 ‘널리 퍼서 말함’입니다. ‘국가나 집단이 자기의 방침, 의견, 주장 따위를 외부에 정식으로 표명함’이 ‘선언’이라는 말을 쓸 때 보통 뜻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 누가 선언하는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언의 주체는 대부분 ‘국가’입니다. 지금은 국제관계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19세기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제관계의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국가가 상대국가에게 전쟁을 선포하거나, 상대방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중립의 뜻을 표시할 때, 또는 전쟁 중인 국가들이 잠시 휴전하거나 전쟁을 끝내고자 할 때, 바로 국가는 상대국가에게 혹은 주변국들에게 ‘선언’을 합니다(개전선언, 휴전선언, 종전선언, 중립선언 등). 또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될 때, 그 국가의 최고 수반은 전 세계에 ‘국가’수립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신흥 국가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선언’은 국가들 사이의 대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를 국가에만 한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대다수 국가들은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모여 국가 수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위해 천명한 선언들을 토대로 합니다. 선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헌법안을 만들고 헌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된 후 국가 수립을 완성합니다. 선언은 국가 수립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의지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선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언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선언의 뜻은 ‘널리 퍼서 말하다’입니다. 이 선언과 ‘말을 퍼뜨리다’라는 뜻의 소문은 언뜻 같은 뜻을 가진 듯하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문은 말하는 주체, 즉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퍼뜨려진 말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지 소문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피거나 뉘끼를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선언의 주체는 분명합니다. 아니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언이든 선언의 모든 내용은 ‘내가, 우리가 누구다’라고 공개적으로 널리 퍼뜨려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1독립운동의 시작을 알린 ‘기미독립선언’,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포한 ‘미국독립선언문’, 억압적인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외친 ‘프랑스인권선언’의 내용은 바로 우리는 일본제국이나 대영제국의 식민지 백성이거나 프랑스 절대왕정의 노예 같은 신민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조선인’, ‘미국인’, ‘프랑스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식민지 백성이나 노예 같은 신민으로 더 이상 취급하지 말고 당신들과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선인’, ‘미국인’, ‘프랑스 시민’으로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예를 갖추라는 당연한 권리 선포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우리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선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체가 스스로를 누구로 규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은 우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식대로 맘대로 우리를 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선언은 선언이 아니라 소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 **새로운 관계를 요청하는 선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누구인지를 정하고, 우리의 권리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언입니다. 그런데 선언은 혼자서 혹

은 우리끼리 맘속에 품은 숨은 의지가 아닙니다. 선언은 상대를 향해 내 의지를 밝히는 ‘고백과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보고 마냥 짝사랑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상대방에게 고백할 때 짝사랑은 연인사이로 바뀝니다. 선언은 속으로 품은 뜻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나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결단은 바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선언은 나 자신의 자유로운 혹은 자유방임적인 독립된 삶의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듣는 상대 국가, 이웃, 시민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하는 출발입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합니다. 마치 서먹서먹하던 혹은 원수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고백과 결단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방식이나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 맘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각자 살아온 방식과 달리 새로운 가치와 원칙을 창조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윤리입니다. 이웃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들 사이에서 선언이 이뤄지는 것은 곧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의 양식을 시작하는 창조적이고 용기 있는, 나아가 가슴 벅찬 모험이기도 합니다.

## 선언은 법의 힘을 넘어서다

낡은 틀을 넘어서 협력과 연대에 기반 한 공존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시작점인 ‘선언’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받는 ‘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은 지금 우리가 공존하는 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을 시행하기 위해 법원, 검찰, 경찰, 교도소 등과 같은 국가기구를 필요로 합니다. 힘을 동원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대표가 법을 정하게 하고 학자들이 여러 정당한 논리를 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이 어떤 상태이든 지금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법과 달리 스스로의 주체성, 자주성에 근거하고 힘과 처벌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법보다 훨씬 높은 인간의지의 표현입니다.

선언은 법의 힘을 넘어서며, 법이 바라보지 못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윤리,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언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이 가해질 수 없습니다. 선언은 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언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언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법적 강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믿음에 기초한 연대의 힘으로

때로는 선언과 부딪히는 법을 개선하기 위해 피땀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낡았지만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잘못된 습관이나 편견을 바꿔나가는 힘든 길을 함께 걷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언들은 국가와 함께 가기도 하지만, 국가를 넘어 국가 혹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 자유롭고 평등한 곳으로 이끌기 위한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걸어 다니는 헌법주체이듯 모든 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주권자이며, 주권자이기에 국가에서, 국가를 향해서, 국가를 넘어서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많은 국가들이 선언의 주체를 모든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에 한정시키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숨겨진 이유입니다. 개인이나 시민사회가 어떤 선언을 할 경우, 그 선언은 국가를 넘어서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언은 모든 새로운 관계의 출발을 위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고 선언의 주체는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 때 국가는 진정 시민을 위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 연대와 공존의 이유를 담는 선언

물론 모든 선언이 낡고 차별적인 것을 넘어 아름다운 시작이지는 않습니다. 독립선언이나 인권선언과 달리 전쟁선언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어떤 선언은 상대를 존중하지도 공존을 위한 예의도 잊은 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평화를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은 언제나 ‘공존의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언은 비록 지금까지 상대



가 연인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아니라 원수이거나 적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쫓아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공존의 이유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선언이 힘들고 어렵지만 창조적이고 용기 있고 가슴 벅찬 작업이자 여정인 이유입니다





## 부록

#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묻고 답하다

**Q.** 인권선언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 4.16인권선언운동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말과 외침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우리는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외쳐왔습니다. 전국 각지의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 앞에 고개숙였던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담아 어렵사리 꼬집어낸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노란리본을 달며 새겼던 다짐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소중한 마음이 단지, 희생자를 애도하며 마땅히 산 자의 도리와 예를 갖추기 위해 되뇌였던 형식적인 무엇인가로 그치거나,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권선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4.16인권선언운동은 ‘더 이상 미안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기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두에게 각인된 참사가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었지만, 참사 이후의 현재 모습은 이런 바람과는 분명히 어긋나 있습니다.

태연하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작년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고,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참사과 이전과 다른 한국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선 권력집단이나,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안전한’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방향을 가져야 할지가 공론화 되어야 합니다. 인권선언운동은 그런 논의자의 하나입니다.

**Q. 아직 세월호 투쟁에 있어서 할 일이 많은데, 인권선언을 하자는 게 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를 풀어나는 실마리, ‘안전사회 건설’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아직 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으니깐요. 여전히 참사 당일과 헛발질에 가까운 구조실패 현장에서 우리는 발을 동동구르고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라는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가’, ‘왜 즉각 구조에 나서지 않았는가’ 등 무수한 의혹은 풀리지 않은채 그대로니깐요.

그런 차원에서 진상규명 투쟁을 비롯한 현재의 세월호 투쟁과 인권선언 운동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령,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에 대한 권리 등은 세월호 유족이나 피해자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전국민적 사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

회에서 발생하는 세월호와 같은 재난, 참사, 사고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 사회적 인식으로 자리잡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요. 이런 권리의식을 확산하는 것, 사회가 마땅하고 당연하게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과 태도를 갖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의 세월호 투쟁의 과제이며, 인권선언운동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세월호 투쟁이 어떤 파고를 그려낼지는 예상할 수 없으나, 각각의 국면에서 제기해야 할 주장이 피해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제기되고 이야기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인권선언운동의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권리목록화 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Q. ‘인권’의 문제로만 세월호 참사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은 다양할 수 있고, 보다 확장되고 풍부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선언운동은 참사를 인권의 문제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선언운동은 세월호 참사가 ‘인간 존엄성 훼손의 결과’라고 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까지의 각각의 국면에서 지켜보게 된 부당함을 ‘인권침해’라고 칭하게 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인간 존엄성’이 훼손된 현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짓밟히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세월호 투쟁의 각각의

국면에서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것,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던 것을 우리의 권리와 연결해 해석하고, 회복해야 할 존엄성과 권리를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 인권선언과 풀뿌리 토론은 어떤 관계인가요?

인권선언이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 앞에서 했던 우리의 약속과 다짐에서 출발했듯이, 선언문이 구성되는 과정 또한 평범한 많은 이들의 기억과 경험에 뿌리내려야 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언이라는 것을 봐왔고, 교육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런 선언이 사실 내가 사는 것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나오는 먼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경험, 교훈이 권위있는 누군가를 통해, 혹은 지배권력 등에 의해 잠식당하거나 대신 이야기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풀뿌리 토론은 각 개개인이 놓인 서로 각자의 위치와 조건에서 충격적으로 맞이한 '세월호 참사'를, 각자의 경험에 기반해 각기 다른 감각과 표현, 언어로 길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동체와 집단의 기억으로 되새기고 구성하는 것이 선언문이라는 최종 형태가 될 것입니다. 선언운동은 선언문을 통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언문이 어떻게 현실의 제도, 정책,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도록 할 것인가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던 우리의 바람을 실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서로의 감각을 놓지 않고, 공통의 감각으로, 공통의 언어로 구성하는 것이 인권선언운동이고, 풀뿌리 토론입니다.



---

펴낸날 | 2015년 9월 10일

기획 · 편집 |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디자인 | 조용신

펴낸곳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연락처 | 02-2285-0416

홈페이지 | [416act.net/416declaration](http://416act.net/416declaration)

페이스북 | [facebook.com/416act.net](https://facebook.com/416act.net)

이메일 | [416declaration@gmail.com](mailto:416declaration@gmail.com)

---